

PM2018-43

2018 예비학교 운영 가이드라인

유치원

2018. 7.



목 차

I. 예비학교(유치원) 운영개요

- 1. 도입배경 및 필요성 1
- 2. 운영목표 1

II. 예비학교(유치원) 운영방침

- 1. 예비학교 선정 기준 2
- 2. 예비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역할 2
- 3. 예비학교 운영 3
- 4. 교원 운용 3

III. 예비학교(유치원) 유아 입급 및 원적학급 복귀

- 1. 입급 기준 및 원적학급 복귀 결정 4
- 2. 학적 관리 5

IV. 예비학교(유치원) 교육과정

- 1. 교육과정 편성 5
- 2. 교육과정 운영방법 6
- 3. 원적학급 복귀 후 교육지원 6

I. 예비학교(유치원) 운영개요

1. 도입배경 및 필요성

- 우리사회 이주민이 증가하면서 학교교육을 통한 한국어(KSL*)교육 지원의 필요성 제기
 - * KSL(Korean as a Second Language) : 모국어가 아닌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
 - '12년부터 한국어 교육과정과 '예비학교'를 도입하여 초·중·고 학교 내 특별학급 형태로 한국어교육 운영
- 외국인주민 다수 거주지역이 형성되고, 중도입국·외국인유아 증가가 가속화되면서 유치원 내 한국어교육 수요 발생
 - 기존 '예비학교' 사업을 유치원까지 시범적으로 확대하여 유아기 한국어교육 맞춤 지원체계 구축 필요

2. 운영목표

- 다문화유아의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 신장
 - 다문화유아의 언어적·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여 언어발달단계에 맞게 한국어로 의사소통하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
- 다문화유아의 한국문화 적응력 향상
 - 한국생활 및 유치원생활에 조기 적응하고, 또래관계를 원만하게 형성할 수 있도록 기본 생활습관교육을 포함한 한국문화교육 지원

II. 예비학교(유치원) 운영방침

1. 예비학교 선정 기준

- 한국어교육이 필요한 중도입국·외국인유아 재원 현황 등을 고려하여 시·도교육청에서 지정 또는 공모함
 - 시·도교육청 자체 예비학교 선정(심사) 기준을 수립·지정하고, 필요시 변경 지정(재지정 및 취소)하는 등 유연하게 운영함
 - ※ 한국어교육이 필요한 다문화유아가 다수 재원하는 유치원 우선 지정 가능

2. 예비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역할

- (구성) 예비학교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'예비학교 운영위원회(그에 준하는 학내 위원회)'를 구성·운영할 수 있음
 - ※ 위원회에서 심의(의결)된 사항은 원장이 정하는 바와 같은 효력을 가짐
 - 학부모 대표, 교사 등 최소 3인 ~ 최대 5인으로 구성
 - 별도 위원회 구성이 어려운 경우 원장의 결정으로 이미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는 '유치원 내 위원회'로 대체 운영 가능
- (역할) 유아배치, 원적학급 복귀, 개별화 교육과정 편성·운영 등 예비학교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·의결할 수 있음

3. 예비학교 운영

- (학급규모) 한 학급당 **10명** 내외 구성을 원칙으로 하며, 그 이상의 수가 입급 할 경우 학급을 증설하여 운영
 - ※ 단, 일시적인 인원 증가 등 예외적 상황인 경우 탄력적으로 학급인원 조정 가능
- (교육기간) **6개월~최대 2학기** 이내
- (교육대상)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이 없거나, 현격히 부족하여 유치원 생활 적응에 어려움이 있는 **만3세~만5세 중도입국·외국인유아**

4. 교원 운용

- (교원배치) 예비학교로 지정된 유치원 소속 교원을 **예비학교 담임(전담)교사**로 배치하거나, **중원(신규)** 배치하는 것을 원칙
 - 지역적 특성, 시·도교육청 교원 수급 상황 등에 따라 시·도교육청에서 적절한 교원 운용 방안을 마련하여 탄력적으로 운영
 - 다수의 교원이 업무를 분할 담당하기보다 소수 교원이 집중 전담
 - 담임(교사)는 **교육경력이 충분하며, 다문화유아 또는 한국어교육 이해도가 높은** 자로 지정·선발
- (강사활용) 교원 외에 필요 시 **강사***를 활용할 수 있으며, 유아기 특성을 고려하여 한국어를 지도할 수 있는 **적임자**를 선발함
 - * 한국어강사(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자격 소지자), 다문화언어 강사(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) 등
 - ※ 우선순위 : ①유아교육 전공자, ②관련 자격 소지자, ③업무분야 경력자

Ⅲ. 예비학교(유치원) 유아 입급 및 원적학급 복귀

1. 입급 기준 및 원적학급 복귀 결정

- (입급기준) 실질적인 한국어 능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, 유아의 이주 배경 유형(국내출생, 중도입국 등)은 부차적으로 고려해야 함
 - ※ 보호자의 교육 희망여부, 유치원 내 부적응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치 결정

예비학교 입급 대상자 선정 관련 주요 사례

- 국내에서 출생한 후 영아기 외국인부모의 국가에서 생활하다가 귀환한 경우
⇒ 해당
 - 북한이탈주민가정의 자녀로 제3국 체류기간이 길어 한국어 구사가 익숙하지 않은 유아 ⇒ 해당
 - 국내에서 출생하고 성장하였으나, 한국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제1언어로 하여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이 없거나 현격히 부족한 유아 ⇒ 해당
 - 정서불안 또는 학습능력 저하로 인한 부적응이 나타나는 국내출생 다문화 유아 ⇒ 비해당
- (입급·복귀 시기) 유아의 예비학교 입급과 원적학급 복귀는 상시로 하되, 학기 중에 입급한 경우 충분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도록 그 다음 학기부터 교육기간으로 산정함
 - ※ 상시 입급으로 기존 유아와 신규 입급 유아의 수준차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필요에 따라 개별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음
 - (입급·복귀 결정) 유아의 예비학교 입급 여부는 원장이 결정하며, 원적학급 복귀는 예비학교 담임(전담)교사의 의견과 원장 또는 예비학교 운영위원회의 결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함
 - 이때, 유아의 언어발달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진단도구를 예비학교 입급 및 원적학급 복귀의 기준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
 - ※ 유아관찰척도 등의 도구 외에도 자체적으로 개발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음

2. 학적 관리

- (학적관리) 예비학교 대상자는 기본적으로 원적학급 정원으로 관리함
- (담당자) 예비학교 대상자의 출석과 생활기록부 관리는 예비학교 담임(전담)교사가 담당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나, 유치원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
 - (출결관리) 다문화유아는 가정환경 특성상 출결상황이 다변적일 수 있으므로, 보호자와의 긴밀한 연락을 통해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
 - (생활기록) 유아의 발달상황 및 성취 정도를 생활기록부에 면밀히 기록하고, 일화기록자료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원적학급 담임교사와 공유해야 하며, 학부모 통지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함

IV. 예비학교(유치원) 교육과정

1. 교육과정 편성

- 기본적으로는 다문화유아가 빠른 시일 내에 원적학급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·운영하여야 함
 - 유아의 학교 적응을 위하여 한국어교육을 제공하되, 원적학급에서 비다문화유아와의 통합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
-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해 놀이중심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내용을 편성·운영할 수 있음
 -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고, 언어 기능 위주의 수업은 지양함

2. 교육과정 운영방법

- (시수) 다문화유아의 한국어 능력, 인지발달 수준에 따라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'개별화 교육과정'을 주당 5시간 내외로 편성·운영할 수 있음
 - ※ 개별화 교육과정은 1:1 수업 또는 소그룹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
- (운영방식) 유치원 일과운영에 따라 원적학급에서의 통합교육과 예비학교에서의 개별화교육을 제공할 수 있음
 - ※ 교육시간은 유아의 한국어 능력 및 유치원 여건 등을 고려하여 유치원에서 통합교육과 개별화교육의 비율을 정해 탄력적으로 편성·운영 할 수 있음
- 다문화유아가 원적학급과 예비학교를 이동하며 활동해야하므로 각 학급의 교육계획안(주간·일간)은 연관성을 가지고 계획·운영 되어야 함
 - ※ 본 가이드라인에서 정하지 않는 예비학교 교육과정 운영 관련 사항은 원장 또는 예비학교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름

3. 원적학급 복귀 후 교육지원

- 원장은 한국어학급 교육기간을 마치고 복귀한 다문화유아가 유치원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적합한 교육지원을 제공해야 함
- 원적학급으로 복귀한 다문화유아의 유치원 적응 상황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필요시 방과후과정 연계 등 지속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함

PM2018-43

2018 예비학교 운영 가이드라인(유치원)

발 행 2018년 7월
발 행 인 윤여각 원장
발 행 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
집 필 중앙다문화교육센터
감 수 진 김효진 교육부
 김경성 경기도교육청
 김영희 안산교육지원청
주 소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14
 전화 : 02) 3780-9853
 FAX : 02) 3780-9939
홈페이지 www.nile.or.kr (국가평생교육진흥원)
 www.nime.or.kr (중앙다문화교육센터)
